

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

※ 어두운 칸(■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가. 원료의 규격 중 시험방법 변경, 효능·효과 변경(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 제외), 기준 및 시험방법(pH 및 메탄올 제외) 변경의 경우: 60일 나.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: 15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

신청인 (양도·양수의 경우 양도인)	상호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)	등록번호(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해당합니다)
	성명	생년월일
	소재지	전화번호

변경 내용

항목	심사받은 사항	변경심사 신청사항	사유

「화장품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의 변경심사를 의뢰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담당자 성명

담당자 전화번호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

첨부서류	수수료
1. 먼저 발급받은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2.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자 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·양수하여 심사받은 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양도·양수계약서를 말한다)	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별표 9에서 정한 금액

처리 절차

변경심사의뢰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변경심사결과통지서 발급
--------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----------

신청인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

